

## 서울지방세무사회-세무정보(2023-08)

### □ 8월의 세무일지

구 분	세 무 일 지
8월 1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7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</li> <li>▪ 7월 원천징수분 법인세·소득세·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신고납부</li> <li>▪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</li> <li>▪ 4대보험료 납부</li> </ul>
8월 16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</li> </ul>
8월 31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 납부</li> <li>▪ 종합소득세 분납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)</li> <li>▪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(주식 등)</li> <li>▪ 7월 지급분 일용근로자(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)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</li> <li>▪ 7월 지급분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 제출</li> <li>▪ 2023년 6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(일용근로제외)</li> <li>▪ 주민세(지방교육세 포함) 개인분 납부·사업소분 신고납부 등</li> </ul>

### □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

-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(법법 63 ①)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는 중간예납의 대상이 아닙니다.(농특법 7 ①)
- ② 2019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('23년부터는 50만원)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.(법법 63 ①) 또한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의 100%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.(집행기준 63-0-3 ②)

- ③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되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.(집행기준 63-0-2 ②) 신설합병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고 이때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하여야 합니다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(흡수합병법인)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됩니다.(법법 63 ①)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도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합니다.
- ④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.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있고 또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한 사업연도로 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해당 법인이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#### <방법 1>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

전기 법인세 부담세액의 1/2 상당액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
전기 산출세액(가산세 포함,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제외)-전기 공제 감면세액-전기 원천징수세액-전기 수시부과세액

위에 산출된 전기 부담세액의 1/2 상당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.

#### <방법2> 당기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

해당연도의 1월~6월 기간 동안의 실적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
(해당 중간예납기간) 법인세산출세액-법인세감면세액-법인세원천징수 세액-수시부과법인세액

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 = (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 × 12/6 × 세율) × 6/12

먼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('23년부터는 50만원) 미만인 내국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.

→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(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)이 30만원('23년부터는 50만원)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.(사전법령해석법인2019-439, 2019.08.29.)

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.

- 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이 없는 법인
- 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
- 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
- ⑤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로서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(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)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.(법법 63 ④)
  - 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 - 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-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·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(집행기준 63의2-0-4).  
아울러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·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.(중간예납제도해설, 2002.7. 국세청)

## □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된 예규

- ①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(서이 46012-11473, 2003.8.12.)

법인이 법인세법 제 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'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'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- ②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인 것임(서면2팀-1572, 2004.7.23.)

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.

- ③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(서면2팀-1381, 2005.8.26)

법인세법 제6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.

- ④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의 중간예납(법인 22601-2126, 1989.7.29.)

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서 법인세 전액의 감면을 받는 법인은 당해 연도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.

- ⑤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판단기준 질의(법인 46012-3265, 1995.8.17.)

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 수입금액이 기타사업 수입금액보다 크게 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

[감수 : 서울지방세무사회 홍지석 연수이사]

## 서울지방세무사회장